

상별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국기원은 정관 제52조에 따라 상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3. 23.>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기원과 국기원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비위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국기원 이사장, 원장에 의해 임명, 선임, 위촉된 사람
2. 국기원과 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
3. 국기원의 행사(교육 등) 주최(주관) 단체, 관계자 및 참가한 사람
4. 국기원의 품·단을 보유하거나 국기원의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3. 23.>

1. 국기원 표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의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국기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국기원이 주최(주관)한 행사(교육) 중 질서문란행위 사항 <신설 2021. 3. 23.>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신설 2021. 3. 23.>
3. 위원 9명 이상 11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21. 3. 23.>

-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원장이 국기원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위원장은 원장이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해 위원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선임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공적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1. 3. 23.>
 3. 태권도, 체육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태권도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국기원의 당연직 이사, 감사와 직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개정 2021. 3. 23.>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해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기원 정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태권도, 체육 관련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 ④ 위원은 위원회 외에 국기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사는 제외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기원 정기이사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이사회일 전날이다.

-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소집) ① 위원장 또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10조(경비의 지급) 국기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회 관련 사항 공개 등)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제13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의무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해임)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해야 한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5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희망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3장 포 상

제17조(포상의 원칙, 기준) ① 포상은 태권도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단체 및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하거나 수여한다.

② 포상의 기준은 포상의 대상 단체 또는 사람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태권도 발전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포상을 거듭 추천하거나 수여하지 않는다.

제18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포상
2. 국기원 표창

제19조(정부포상) 제18조 제1호의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20조(국기원 표창) ① 제18조 제2호의 국기원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태권도 대상
 - 가. 태권도 국기장
 - 나. 태권도 진인장
 - 다. 태권도 문화장
2. 태권도인 상
 - 가. 교육부문
 - 나. 심사부문
 - 다. 연구부문
 - 라. 지도자부문
 - 마. 선수부문
 - 바. 심판부문
 - 사. 경영부문
 - 아. 창조부문
 - 자. 봉사부문
 - 차. 문화부문
 - 카. 특별부문
3. 국기원 원장 표창
4. 기타

② 국기원 표창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기원의 표창권자는 원장으로 한다.

④ 표창 수여 세부기준 및 수여계획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절차) ① 제19조의 정부포상 및 기타 유관기관의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체 및 사람에 대해 원장이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20조 제1항 제1호의 태권도 대상, 제2호의 태권도인 상은 국기원과 국기원이 지정한 태권도 및 체육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시상식'에서 수여한다.

③ 제2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국기원 임원과 국가태권도협회 규모 이상의 단체장 또는 국기원의 표창을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해 원장이 결정하고, 추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 3. 23.>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원장의 결정이 표창의 무분별한 남발로 이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표창 총량 제한 등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1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기원에 제출해야 한다.

⑥ 국기원은 제20조의 국기원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표창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제22조(표창의 취소 등) ① 제20조에 따른 국기원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표창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한다.

1. 표창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태권도와 국기원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고, 국기원 표창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표창의 수여) 국기원 표창은 국기원 원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24조(부상) 국기원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국기원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거나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해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징 계

제26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징계해야 한다.

제27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어도 징계할 수 있다.

제28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조사해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국기원을 포함한다) 및 행사(교육 등)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업무방해 등 비위의 사건
 2. 국기원의 품·단 및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기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태권도 관련 입학비리 및 승부조작, 편파판정
 4. 폭력·성폭력
 5. 국기원에서 발행(발급)하는 품·단증 등 각종 증명서를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변조하는 경우
 6. 태권도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21. 3. 23.>
 7.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유사사업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국기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9. 국기원 임원 선출(선임)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국기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언론에 보도되며 태권도 및 국기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11. 부정 참가, 행사(교육 등) 진행 방해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행사 질서 문란 행위
 12. 기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②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희망)퇴직 등의 사유로 국기원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9조(조사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조사범위에 따라 4인 이하의 조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조사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 ③ 조사상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조사소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조사소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⑤ 조사소위원회는 국기원, 징계혐의자, 참고인 등에게 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조사소위원회 위원은 당해 사안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1. 3. 23.]

제30조(징계시효)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6조 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 태권도 심사 관련 비위행위는 10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신고 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1. 3. 23.>

제31조(징계기관 분류) 위원회는 사안이 복합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제32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자격정지, 강단, 해임, 제명 <개정 2021. 3. 23.>
2. 경징계: 서면경고, 견책, 응시제한, 근신 <개정 2021. 3. 23.>

제33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해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서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서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 기준)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누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2】를 참작하여 징계한다. <개정 2021. 3. 23.>

제36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은 사면, 복권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해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국기원 표창을 받은 공적
 4. 본 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1. 3. 23.>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태권도 관련 입학비리
 3. 성폭력 <개정 2021. 3. 23.>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임원 선출(선임) 관련 제반 규정 위반
- ⑥ 제명을 감경하면 5년 이상의 자격정지·해임으로 한다. <신설 2021. 3. 23.>
-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해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별지 제4호 서식】하면, 국기원은

징계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38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해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해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행사 중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국기원이 주최(주관)한 행사(교육 등) 관계자 및 참가한 사람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7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40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개정 2021. 3. 2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해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해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41조(제한 조치) 제32조의 징계종류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3.>

1. '서면경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 <신설 2021. 3. 23.>
2. '견책'은 통보서를 보내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유의할 것을 알리며, 징계이유가 재발될 경우 중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다.
3. '응시제한'은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국기원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각종 자격 연수의 응시를 금지한다.
4. '근신'은 일정기간 국기원이 주최, 주관, 승인하는 모든 행사와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각종 자격 연수, 각종 사업의 응시와 참여를 금지한다. 다만, 품·단 등 국기원 관련 각종 자격은 유지하고, 각종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5.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국기원 관련 모든 지위와 자격을 정지하는 것으로 국기원이 주최, 주관, 승인하는 모든 행사와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각종 자격 연수, 각종 사업의 응시와 참여를 금지하며, 품·단 등 국기원 관련 각종 자격도 금지하고, 각종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6. '강등'은 국기원이 부여한 태권도 품·단을 하위 품·단으로 강등 조치한 것으로 국기원 관련 모든 행사, 사업, 심사에 응시, 참여를 할 경우 강등된 품·단으로 참여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는 강등된 품·단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강등되기 전 품·단으로 취득한 국기원 관련 각종 자격도 말소조치하며, 강등된 품·단의 승품·단 연한은 징계일 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1. 3. 23.>
7. '해임'은 국기원 관련 모든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국기원 관련 모든 행사, 사업, 심사에 응시, 참여를 금지한다. 다만, 품·단 등 국기원 관련 각종 자격은 유지하고, 각종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8. '제명'은 국기원 관련 모든 지위와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국기원 관련 모든 행사, 사업, 심사에 응시, 참여를 금지하며, 각종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제명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취득한 품·단 등 국기원 관련 각종 자격을 말소 조치한다.

제42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징계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국기원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

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해야 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인지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부가금을 조정해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43조(행정처리) 국기원은 포상과 징계 결정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4조(언어 해석) 이 규정 및 이 규정 관련 각종 문서의 국문(한글) 원문과 영문 원문이 불일치하거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한글) 원문이 우선한다.

제4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상벌분과위원회 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졌으나 정상 참작 또는 최종 의결을 반복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

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으로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상벌분과위원회 규칙은 자동 폐지된다.

부 칙 <제정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3. 23.>

표창 대상

1. 태권도 대상

명칭	대상
태권도 국기장	- 국기원의 최고 표창으로서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국기원 태권도 9단 보유자
태권도 진인장	-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국기원 태권도 유단자
태권도 문화장	-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태권도인 상

부문	대상
심사	-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심사의 공정성 강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교육	- 학문적 가치, 교육정책의 창의성 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태권도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연구	- 태권도 기술 및 이론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지도자	-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에 공헌이 높고, 사명감이 투철한 지도자로서 선수지도경력과 팀(선수) 수상경력이 뛰어난 사람
선수	- 국제대회 및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회 이상의 규모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타 선수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심판	- 공정한 판정으로 올바른 경기(경연) 질서 확립에 공적이 있고, 심판 경력이 다수인 사람
경영	- 태권도장 또는 태권도 관련 산업체를 경영하면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창조	-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태권도의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
봉사	- 봉사정신을 실천해 사회봉사에 공로가 뚜렷하고 태권도 봉사를 통한 태권도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문화	- 태권도 문화 발전에 공을 세워 태권도 가족의 문화 향상과 국기원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특별	- 언론 및 체육 분야 등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국기원 원장 표창

명칭	대상
국기원 원장 표창	- 태권도인(태권도 품·단 보유자, 태권도 수련인, 태권도 관련 단체 임직원 등)의 긍지함양과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기타

명칭	대상
감사장	-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
공로상	-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사람

【별표 2】 <개정 2021. 3. 23.>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징계 기준의 결정은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2.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가.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나.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위반행위	내용
단체(국기원을 포함한다) 및 행사(교육 등)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 배임, 회계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6월 이상 3년 미만의 근신 또는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강단, 해임, 제명
단체 및 행사(교육 등) 운영과 관련한 직권남용, 직무태만, 업무방해 등 비위의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응시제한 또는 근신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근신 또는 자격정지, 강단, 해임, 제명
국기원 품·단 및 각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기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응시제한 또는 근신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근신 또는 자격정지, 강단, 해임, 제명
태권도 관련 입학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제명
태권도 관련 승부조작, 편파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강단, 해임, 제명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견책, 2년 미만의 응시제한 또는 근신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강단, 해임, 제명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행(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의 경우 : 영구 제명 · 성폭력(성폭행 제외)의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국기원에서 발행(발급)하는 품·단증 등 각종 증명서를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변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강단, 해임, 제명
태권도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응시제한 또는

훼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신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강단, 해임, 제명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유사사업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강단, 해임, 제명
국기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6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강단, 해임, 제명
국기원 임원 선출(선임) 등과 관련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6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강단, 해임, 제명
국기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언론에 보도되며 태권도 및 국기원의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응시제한 또는 근신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근신 또는 자격정지, 강단, 해임, 제명
부정 참가, 행사(교육 등) 진행 방해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행사 질서 문란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응시제한 또는 근신 ·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근신 또는 자격정지, 강단, 해임, 제명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41조 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p>※ 비교</p> <p>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p>				

공적조서

<뒤쪽>

주요 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내용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 (연 월 일)	내용
공적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표창대장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소 속		직 위	
	주 소			
의결주문	(적용 기간 : ~)			
징계이유				
적용근거				
<p>20 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국기원 상벌위원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 장</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iv style="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원</p>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iv> <p style="margin-top: 20px;">국기원 귀중</p>				

【별지 제6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소 속		직 위	
	주 소			
의결주문				
이유				
20 년 월 일 국기원 상벌위원회 위원장 인				

* 의결주문: 징계부가금은 ○배(○원)에서 ○배(○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